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32249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규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2. 1. 13.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6. 4. 5. D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256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35,653,7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8. 5. C에게 1,100,000,000원을 이자 연 18%, 지연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4. 8. 9.부터 2005. 1. 21.까지 C에게 합계 90,217,923원을 이자 연 18%, 지연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5. 7. 22. E으로부터 E의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뒤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68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양수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3) 원고는 2017. 7. 27. 다시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38503호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양수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 이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8. 24. 확정되었다.
- 4)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9.을 기준으로 135,653,721원이다.

#### 나. C의 공정증서 작성 및 피고의 강제집행실시

- 1) C는 2016. 4. 5.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9.,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C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D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25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8316호로 청구금액을 569,711,85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6. 4. 25. C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20. 8. 18.까지 H로부터 합계 231,507,086원을 변제받았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H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유일한 적극재산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의 모친 망 I이 C에게 1995. 12. 1. 1억 8,000만 원, 1996. 8. 1. 2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1994. 11. 5.부터 1998. 6. 26.까지 C의 처남 J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직접 C에게 모두 1억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I이 사망함에 따라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고가 상속하였고, 2014. 3.경 위 각 대여원리금의 액수가 5억 원을 상회함에 따라 C와 피고는 잔여 채무를 4억 원으로 조정하여 이를 C가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C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다시 C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C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I이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C의 채권자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C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C가 피고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였던 C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9.을 기준으로 135,653,721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20. 8.

18.까지 H로부터 합계 231,507,086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135,653,7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